

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. 12. 8 선고 2021가단13041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한국자산관리공사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맥

담당변호사 강경철

피 고 A

변 론 종 결 2021. 11. 17

판 결 선 고 2021. 12. 8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/5 지분에 관하여, 피고와 B 사이에 2020. 2. 26. 체결된 증여계약(이하 ‘이 사건 증여’라 한다)을 취소하고, 피고는 B에게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등기계 2020. 2. 28. 접수 제469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

가. 피보전채권의 존부

- 1) 갑 제1, 2호증의 각 1, 2, 3의 각 기재에 의하면, B는 2017. 6. 8. C조합으로부터 8억 5,0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, 원고는 2018. 5. 30. C조합의 B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을 양수하였고, 2018. 5. 31.경 B에게 위 채권양도에 관한 통지가 이루어진 사실, 2021. 4. 28. 당시 원고의 B에 대한 채권액은 원금이 87,104,855원이고 연체이자 227,503,518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
- 2)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B는 원고에게 87,104,85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, 원고의 B에 대한 위 채권은 사해행위 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.

나. 사해행위의 성부

- 1) 이 법원의 통영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, B는 2019년 말까지 통영시 D 전 1448㎡ 이외에 다수의 부동산 및 양어장을 소유하고 있다가 이 사건 증여 이전에 이를 모두 처분한 사실, B는 2020년도부터 재산세를 납부한 내역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, 이에 의하면 B가 이 사건 증여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.
- 2) 원고는, B가 이 사건 증여 당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/5 지분 이외에 별다른 재산을 갖고 있지 않았음에도 피고에게 무상으로 위 부동산 지분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반면, 피고는,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E 문중인데, E 문중이 이를 B에게 명의신탁해 둔 것이어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.

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신탁행위에 기한 반환의무의 이행으로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행위 또는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로부터 그 등기를 회복하는 중간단계로서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기존채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(대법원 2001. 8. 24. 선고 2001다35884 판결 등 참조).

살피건대, 갑 제3호증, 을 제1 내지 4호증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 또는 영상,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,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(이하 ‘이 사건 토지’라 한다)는 1914. 3. 3. F에게 사정된 이후 G이 1965. 12. 31.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, G은 1940년경 별지 목록 제1항

기재 건물(이하 ‘이 사건 건물’이라 한다)을 신축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, G은 1989. 3. 12. H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도하였고, H이 1989. 4. 18. 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, E 문중은 문중 재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H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한 사실, E 문중 종중원인 B, I, J, K, L이 2015. 3. 24.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중 각 1/5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H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, K이 2015. 6. 12.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중 1/5 지분에 관하여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, 이후 2018년 및 2019년에 B의 주식회사 M,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대한 채무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중 B의 2/5 지분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또는 압류등기가 마쳐지자 E 문중의 결정을 통하여 위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, E 문중은 이 사건 건물을 재실로 사용하여 왔고, 문중 제사를 지낼 때 외에는 비워두고 있으며, 종중원들이 2021. 11.경 이 사건 건물에 모여 제사를 지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,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은 E 문중 소유로서 그 종중원인 B에게 그 일부 지분이 명의신탁되어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, B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중 2/5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은 명의수탁자인 B가 E 문중의 신탁행위에 기한 반환의무의 이행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.

3) 따라서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, 이를 전제로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.

2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.

판사 진현섭

